

대전지방법원 2022. 4. 20 선고 2021나104571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2. 4. 20 선고 2021나104571 판결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2. 4 선고 2019가단11486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규

변론종결 2022. 3. 23.

판결선고 2022. 4. 20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2. 4. 선고 2019가단11486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4,448,000원과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. 31.부터, 154,448,000원에 대하여 2019. 6. 24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4,448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6. 24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(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선용, 판사 최리지, 판사 강병하